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상하수도 요금 인상(안)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표 개정(별표 1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6.3.23. ~ 4.12)

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마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하수도 요금이 동결되어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(10.7%)을 2014년 행정자치부 “지방 상·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” 권고사항(2017년까지 현실화율 80% 이상 인상)을 반영하여 2016년 10월 고지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목표 현실화율을 20.8%까지 상향되도록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키고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표[별표 1]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.

○ 검토결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적정요금 인상 방안을 통해 재원확보 및 시설 재투자로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 공공요금 물가 상승으로 현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를 병행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.